



이용약관

제1장 총괄사항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책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클럽 및 이 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모든 내장객은 클럽에 내장하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시에는 반드시 우리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약관의 성립

이 약관은 프론트에서 입장 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마침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프론트에 게시하므로 전항의 입장수속과 함께 내장자는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일반준수사항

제6조 예약

-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클럽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원간에 예약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각 회원에게 균등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1 위약시 벌칙사항

- 예약 후 예약일 제외 6일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를 하지 않고 위약 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위약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부과하고 위약점수와 벌칙이 적용된다.
단 위약조치 적용은 현재 예약되어 있는 마지막 익일부터 적용하고 취소 일자 산정시 예약당일은 제외한다.

※ 위약금

NO SHOW	주 중	주 말
회원	회원그린피 X 4명 = 요금부과	회원그린피 X 4명 = 요금부과
비회원	비회원그린피 X 4명 = 요금부과	비회원그린피 X 4명 = 요금부과

※ 위약벌칙 사항

구 分	주 중		주 말	
	위약점수	벌 칙	위약점수	벌 칙
위 약	60점	3개월 예약정지	90점	3개월 예약정지 및 30점잔여 벌점으로 누적
당일 취소/당일 미내장	60점	3개월 예약정지	60점	3개월 예약정지
당일제외1일전 취소	30점		50점	
당일제외2일전 취소	20점		40점	
당일제외3일전 취소	15점	위약점수 누적	30점	위약점수 누적
당일제외4일전 취소	10점		20점	
당일제외5일전 취소	5점		10점	

제7조 요금의 부담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입장료

경기도 양주시 만송로 244

대표전화. 031-820-1500 | Fax. 031-820-1512

2. 입장료에 부수한 제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3.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4.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8조 요금의 환불

1. 입장요금은 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회사가 선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불을 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기진행 홀수에 따라 회사가 정한 입장료를 차등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9호 이용시간과 휴장

1.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2.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는 이용할 수 없다.

제10호 초과비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18홀수를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클럽이 초과 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클럽이 정한 추가요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2. 회원 우선 입장으로 비회원 이용을 제한할 때

3.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4.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5.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6. 매너 등 골프로서의 제반 규칙 및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이용객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일 때

7. 경계위원회에서 이용 거절을 통보 받은 자

8. 학생이 입장했을 때(고등학생 이하) 단, 골프협회 추천에 의한 선수로서 클럽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2조 경기규칙 적용

모든 경기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조 에티켓, 매너의 엄수

- 모든 경기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고 경기시 상의는 깃이 있는 티-셔츠, 하의는 긴 바지를 착용하여야 하고 무릎 위로 오는 하의를 착용시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을 신어야 하며 (단, 여성의 경우 양말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절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준비스윙의 제한

1.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외에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2. 경기자는 경기중 어디서나 2회이상의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제15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경기자는 도박적 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용약관

3. 느린 경기 운영으로 타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경기 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6조 시설물의 훼손 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방지책임 및 기타 준수사항

모든 경기자는 경기시에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항상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하고 안전관리상 일체의 책임을 경기자가 진다.

1.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 도중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을 진다.
4. 코스내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코스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칠영할 수 없다.
5. 경기자는 클럽의 종사원 및 경기보조자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케하는 요구는 삼가야 한다.
6. 클럽의 사전승인없이 물품의 판매, 선전, 광고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7. 경기자 이외의 코스내 입장(별도 허가받은 경우 제외)은 할 수 없으며, 사전 허가 없이 입장하여 일어나 손해에 대하여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8.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클럽은 요금을 정산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8조 대피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9조 놔성, 낙뢰의 대피

경기 진행중 놔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20조 비거리 확인 의무

골프경기 보조자 진행 안내 등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타자전방 진입금지

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도 안된다.

제22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훼손 복구 의무

경기자는 폐어웨이, 그린, 벙커, 수목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시설물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에 위험이 높은 물품의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경기 중에 흡연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불조심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제26조 귀중품등의 별도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휴대품의 자기책임과 음식물반입금지

1.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우리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는 클럽에서 판매하는 음료, 주류, 공산품 등을 제외한 어떠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클럽은 위반자를 퇴장시킬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예약을 거절할 수 있다.
3. 단, 지병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음식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클럽의 승인을 받고 반입할 수 있다.

제28조 락카의 관리

이용자는 배정받은 락카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이의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0조 승용차의 운전의무

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현관근무자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의 열쇠를 본인 책임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클럽은 보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회사의 책임과 면책

제32조 친절봉사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예약과 질서유지

클럽은 이용자로부터 예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순서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입장한 순서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며 원활한 경기 진행이 되도록 한다.

제34조 경기자의 책임

1. 모든 경기자는 제12조 내지 제24조의 각 규정에 위배하여 발생된 자기 자신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경기자의 책임으로 되며 클럽은 일체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플레이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의로 코스내를 출입할 수 없다.

제35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은 때에는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부칙

제1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의 개정은 클럽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
2. 이 약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프론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시행

1. 이 약관은 198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약관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